

『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·구축하여 주민등록등·초본 발급시 수입증지의 전자 날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등·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 추가(안 제5조의2)
- 증지의 종류에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(안 제6조)
- 행정서식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

4. 참고사항

-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

5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의 주민등록 등·초본 수입증지 전자 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추가하고,
또한 현재 수입증지가 발행되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증지의 종류에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